

#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폐놀사건후 3배가량 오른 배출부과금—

**배출** 부과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환경법에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의 정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근본취지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제도는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왔다. 부과금의 액수가 적기때문에 기업이 방지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부과금을 납부하고 계속조업하는 사례가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올해 2월 환경관리법 제정과 3월의 폐놀 오염사건을 거치면서 두차례에 걸쳐 기본부과금을 신설하고 부과계수를 대폭높이는 등 이 제도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러나 환경처의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부과금 부과대상항목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있는 환경법에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35개 항목중 15개 항목만이 부과금 대상항목이

고, 대기오염물질중에는 49개항목 중 10개 항목만이 부과금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전항목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수질오염물질인 폐놀이 원래는 대상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폐놀사건이 터진 뒤에서야 부과금 대상항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국의 배출업체 점검시 시료를 채취 하는데 있어서 순간농도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대표성이 결여된 운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한 후 보통 15일이 경과된후에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게 통례이나 보통 7일이면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알수 있으므로 이를 즉시 팩시나, 유선상으로 통보하여 준다면 업체에서

는 오염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따른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제도운영이 즉흥적이라는 비난도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2월 환경법의 제정시 기본부과금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나, 3월 폐놀사건이 나자 갑자기 6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를 3배 가까이 높였다. 쾌적한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배출행위는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처리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토록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을 어찌해서 환경법 제정 당시에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3월 폐놀사건이 난 후에야 비로서 3배 가량이나 올려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폐놀사건을 계기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처리비용이 갑자기 3배가량 상승했다는 뜻인가? 이는 당국이 원칙을 무시한채 국민의 여론에 따라 즉흥적인 행정을 띠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부과금제도가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